교직원인사규정

제정 1981. 1. 5. 제17차 개정 2020. 6. 23.

제 1 장 총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상지학원과 학원이 유지·경영하는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확립하여 공정을 기함으로써 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건학이념 구현에 능동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15.1.6.)

제2조 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임용권자"라 함은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장을 말한다.
- 2. "제청권자"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을 말한다.
- 3. "교직원"이라 함은 학교법인 상지학원과 학원이 유지·경영하는 각급기관의 교원(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제외한다)과 직원을 말한다.(개정 15.1.6.)
- 4. "직종"이라 함은 사무직, **기술직 등** 직능별 구분을 말한다.(개정 20.6.23.)
- 5. "임용"이라 함은 신규채용, **승진, 승급, 근속승진, 대우직원 선발** 전직, 전보, 겸임, 파견, 강임, 휴직, 직위해제, 정직, 복직, 면직,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.(개정 01.9.5., 06.5.17., 20.6.23.)
- 6. "전직"이라 함은 직종변경을 말한다.(호신설 20.6.23.)
- 7. "전보"라 함은 동일한 기관내에서의 보직 변경이나, 부서이동을 말한다.(개정 06.5.17.)(호변경 20.6.23.)
- 8. "교류"라 함은 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각급기관간의 인사교류를 말한다.(호변경 20.6.23.)
- 9. "강임"이라 함은 차하위 직급으로 강등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.(호변경 20.6.23.)
- 10. "직급"이라 함은 **직무의 종류,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.**(호변경 및 개정 20.6.23.)
- **11.** "직위"라 함은 1인의 교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.(호변 경 20.6.23.)
- 12. "복직"이라 함은 휴직, 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교직원을 복직시키는 것을 말한다.(호신설 20.6.23.)
- 13. (삭제 2020.6.23.)
- 제3조 (교직원의 구분) ①교직원은 교원과 직원으로 구분한다.
 - ②"교원"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에 의거 자격의 인정을 받고 각급학교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·교육하는 자를 말한다.(개정 04.8.10., 20.6.23.)

- ③직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사무직, **기술직**, 별정직, 일반직으로 나눈다. (개정 01.9.5., 14.08.14., 20.6.23.)
- 1. 사무직 : 일반행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
- 2. 기술직 : 사서, 전산, 건축, 전기, 실험기사 등 관련분야 **전문기술 또는 기능 업무를** 수행하는 자(개정 04.8.10., 20.6.23.)
- 3. 별정직 : 병역업무를 수행하는 자(호변경 20.6.23.)
- **4.** 일반직 : 고등학교에서 교육행정, 관리운영, 기술직 업무를 수행하는 자(호신설 14.08.14.)(호변경 20.6.23.)
- 제4조 (직급의 구분) ①교원의 자격 구분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에 의한다.(개 정04.8.10., 20.6.23.)
 - ②직원의 직종별 직급 구분은 학교법인상지학원정관(이하 "정관"이라 한다) 제103 조 별표에 게시한 바와 같다.

제 2 장 임용, 승진과 전보, 인사교류

- 제5조 (임용의 원칙) 교직원의 임용은 그 자격, 시험성적, 교육경력,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거 선발한 자를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장이 임용하며, **각급 기관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용한다. 다만,** 제14조에 의한 임시임용과 계약 임용은 각급기관의 장이 임용한다. (개정 01.9.5., 15.1.6., 20.6.23.)
- 제6조 (결원보충 방법) 각급기관의 직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신규채용, 승진, 강임, 전직, 전보 또는 교류 등의 방법에 의한다.(개정 15.1.6.)
- 제7조 (신규임용) ①교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원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전문분야의 자격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을 거치지 않고 특별채용 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야 한다.(개정 04.8.10.)
 - ③신규임용 할 때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, 수습기간 중 1회의 평가를 실 시하고, 수습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기준에 미달하고 역량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 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직원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면직 할 수 있다. 다만 경력직은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.(항신설 06.5.17.)(호변경 및 개정 20.6.23.)
 - ④수습기간중의 급여월액은 보수 및 제수당의 80%를 지급한다.(항신설 06.5.1.7)(호 변경 20.6.23.)(조명칭 변경 20.6.23.)
- 제8조 (승진) ①직급간의 승진은 동일 직종내에 근무하는 바로 하위직급 교직원 중에서 교직원인사규정운영내규(이하 "내규"라 한다)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년수, 근무성적, 경력평정, 각급기관장의 의견,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각급기관

- 의 장이 제청한자를 이사장이 임용하되, 법인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임용한다.(개정 15.1.6)
- ②교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. (개정 15.1.6.)
- 1. 교원 :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1조에 의함(개정 20.6.23.)
- 2. **사무직, 기술직**(호변경 및 개정20.6.23.)
- 가. 3급 이상 3년 이상
- 나. 4급 4년 이상
- 다. 5급 5년 이상
- 라. 6급 4년 이상
- 마. 7급 **3년** 이상
- 바. 8급 3년 이상
- 사. 9급 2년 이상
- 아. (삭제 20.6.23.)
- **3.** 일반직 : 「**지방공무원임용령**」 **제33조 내지 34조에** 의함(신설 15.3.11.)(호변경 및 개정 20.6.23.)
- ③학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전2항의 승진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할 수 있다.
- ④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본인의 능력으로 보아 상위직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제9조 (승진임용의 방법)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.(개정 01.9.5.)
- ②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 중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임용하되, 각급기관 5급 이상은 2배수로 제청받아 임용할 수 있다.(개정 06.5.17., 15.1.6.)
 - ③직원의 승진은 매 학년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(개정 04.8.10.)
- 제10조 (인사교류 및 파견) ①임용권자는 법인과 각급기관 교직원의 중장기적 수급 계획의 인적자원 확보, 직급간 불균형해소, 업무능력과 직무기술 향상등 경쟁력 강화와 학교발전을 위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.(개정 16.3.16., 16.8.12.)
 - ②임용권자는 법인과 각급기관의 교직원을 행정업무 지원 및 해당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파견할 수 있다.(항신설 16.3.16.)(개정 16.8.12.)(항변경 20.6.23.)
 - ③인사교류는 각급 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임용권자가 실시한다.(항신설 16.3.16.) (개정 16.8.12.)(항변경 20.6.23.)
 - ④파견된 직원의 근무평정, 근무기간 및 인사관리 등 처우에 관하여는 파견 근무지의 기관장에게 위임한다.(항변경 16.3.16., 20.6.23.)
- 제10조의2(전보 또는 승급) 각급기관 소속 직원의 전보 또는 승급은 해당 기관의 장

- 에게 위임한다.(조신설 15.1.6.)(조명칭 변경 및 개정 20.6.23.)
- 제11조 (겸임, 겸직)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거나 특히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 직무의 상·하급간에 겸임 또는 학원내 타기관의 직무를 겸직시킬 수 있다. 이 경우에 본직이 면직되었을 때에는 겸직도 당연 면직된다.
- 제12조 (결격사유) 정관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.(개정 04.8.10.)

제13조 (삭제)

- 제14조 (임시임용과 계약임용) ①이 법인과 각급기관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순한 잡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.(개정 15.1.6.)
 - ②이 법인과 각급기관에서는 직원정원,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한 직종에 관하여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1년 한도 내에서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각급 기관장의 결정에 따라 재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(개정 06.5.17., 15.1.6)
 - ③제1·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은 각급 기관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3 장 사기 · 신분보장

- 제15조 (의사에 반한 신분조치) 교직원은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,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임시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16조 (포상) ①교직원으로서 근무에 정려하거나 학원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한다.
 - ②특별히 유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3월의 범위내에서 특별 상 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③포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17조 (당연퇴직) **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**(개정 20.6.23.)
 - 1. 정관 제8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였을 때다만 제83조의제1항제5호는 「형법」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. (호신설 20.6.23.)
 - 2.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(호신설 20.6.23.)
 - 3. 정년에 달한 때 (호신설 20.6.23.)
- 제18조 (면직) 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.
 - 1.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
 - 2.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

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

- 3. 본인이 퇴직을 희망할 때
- 4. 정당한 사유없이 연간 15일 이상의 무단결근 또는 20회 이상 무단조퇴, 지각 한 자
- 5. 제7조제3항에 의거한 평가 결과가 계약종료 사유에 해당될 때
- 6.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
- 7. 「사립학교법」제5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, 다만 이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(조명칭 변경 및 전문개정 20.6.23.)
- 제19조 (휴직) ①교직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44조, 제45조, 제46조의 규정에 의한다.
 - ②휴직 교직원의 처우에 관하여는 정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다. 다만, 학원발전에 공이 있는 자이거나 그 휴직사유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보수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③휴직자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15일전에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숭인을 얻어야 한다.(항신설 20.6.23.)
- 제20조 (휴직의 효력) 휴직중인 교직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 (개정 01.9.5.)
- 제21조 (**직위의 해제**) **정관 제48조 규정에 의한다.**(조명칭 변경 및 전문개정 20.6.23.) 제22조 (강임) 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강임할 수 있다.
 - 1.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감소로 과원이 되었을 때
 - 2. 직무능력이 부족하여 그 직급에 상당하는 직무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
- 제23조 (정년) ①교직원의 직종별, 직급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학원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.
 - 1. 교원은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7조를 따른다.(개정 14.08.14., 20.6.23.)
 - 2. 사무직, 기술직, 별정직은 61세로 한다.(개정 01.9.5., 20.6.23.)
 - 3. 일반직은 「**지방공무원법**」 **제66조를** 따른다.(호신설 07. 5.14)(개정 14.08.14)(호 변경 및 개정 20.6.23.)
 - ②교직원은 그 정년이 달한 **날이 속한 학기의 말일에** 당연히 퇴직한다.(개정 04.8.10., 14.08.14., 20.6.23.)
 - ③(삭제 20.6.23.)

- 제24조 (성실의무) 교직원은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학원발전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제25조 (복종의 의무) 교직원은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동료직원과 화목하여야 한다.
- 제26조 (직장이탈 금지) 교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.
- 제27조 (친절·공정·비밀유지의 의무) 교직원은 친절·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, 직무상 지득한 비밀은 엄수하여야 한다.
- 제28조 (청렴의 의무) 교직원은 직무에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,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,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29조 (품위유지의 의무) 교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30조 (영리업무 및 겸직금지) 교직원은 학원 본연의 업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소속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- 제31조 (정치운동 및 단체행동금지) 교직원은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.(개정07. 5. 14) 제32조 (삭제)

제 5 장 보수

- 제33조 (보수결정의 원칙) ①교직원의 보수는 일반 표준생계비, 공무원의 봉급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적당하도록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한다.
 -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설치하여 경영하는 수익사업기관 및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의 직원 보수는 연봉제로 할 수 있다. (항신설 01.9.5)
 - ③법인 소속 직원은 상지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을 준용하되, 그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 다만, 계약직원은 근로계약을 통해 이사장이 정한다. (항신설 15.1.6)
- 제34조 (실비변상) 교직원이 보수를 받는 이외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.

제 6 장 징계

제35조 내지 제39조 (2012. 3. 16. 교직원징계에관한규정 제정 시 폐지)

제 7 장 보칙

- 제40조 (이사장 보고 등) 각급기관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전보, 포상, 근무성적 평정 등을 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(개정 15.1.6) 제41조 (근무성적 평정) ①각급기관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(개정 04.8.10)
 - ②각급기관의 장은 교직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부본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(개정 04.8.10)

제42조 (삭제)(개정 04.8.10).

- 제43조 (이사회의 인사시책 권유, 시정명령 등) ①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인사시책과 교직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각급기관의 장에게 그 실시를 권유할 수 있다.
 - ②이사장 및 각급기관의 장이 시행한 교직원 인사처분(신규채용, 강임, 전보, 인사 교류, 직위해제, 직권면직, 징계처분, 근무성적평정, 승진후보자 명단 작성)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(개정 15.1.6)
- 제44조 (위임규정) 교직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급기관의 실정에 맞게 각급기관 내규로 정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8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사무직, 기능직의 계급 구분에 대한 경과 조치) 전 규칙 제4조 별표 1, 사무 직과 1의 2, 기능직에 계기된 계급 구분은 이를 폐지하고 정관 제103조(정원) 별표 에 의한 일반직 및 기능직 계급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00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 ①현재의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자는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하도록 한다.
- ②비정규직이 담당하는 업무 중 외부용역에 의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부용역으로 전환하도록 한다.
- ③이 규정은 2001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33조의 제2항은 2001년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단 상지영서대학 및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, 상지의원은 2005년 3월 1일자로 적용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7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23조의 제3항은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정관 제103조(정원) 별표3의 기능직이 폐지될 때 까지 제3조 및 제8조의 기능직 관련 규정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.